

인천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19가합645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9. 15 선고 2022나11119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19가합64586 판결

전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경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성규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우재준, 이기환, 김희재

변론 종결2021. 9. 30.

판결 선고2022. 1. 13.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2019. 6. 3. C 주식회사의 D 주식회사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금 채권 1,332,7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61,092,2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861,092,2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의 표시는 생략하고, 다른 회사의 경우에도 같다)는 2017. 5. 31. 그 소유의 인천 서구 E, F, G, H, I, J 대지 6필지 8,768.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D과 K조합 외 3사를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1순위 우선수익권 금액을 합계 8,700,900,000원으로 정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매도인 겸 위탁자로서, L는 양도인 겸 시행자로서, 원고와 2017. 6. 1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인천 서구 M 토지 지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권양수도 및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하 C과 L를 함께 지칭할 때는 'C 등'이라 한다).

1) = 계약금 1,379,300,000원 + 중도금 6,693,000,000원

제1조(부동산의 표시 및 매매금액)

◆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사업부지내 미 매입한 인천시 소유 토지(인천 서구 M 대지 4,009.6㎡², 이하 "인천시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C 등이 연대하여 매각허가 결정을 받고, 원고가 매수하여 사업부지로 사용하는 조건부계약으로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무효이다.

제3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매매계약서 날인 후 계약금 입금시 발생하며, C 등이 연대하여 사업권을 원고에게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인천시 소유 토지의 매각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원고가 매수하지 못할 경우, 국가정책이나 천재지변, 관련 법률개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조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아무런 조건 없이 해제된다.

제4조(매매금액 지급시기 및 방법)

① 매매금액 지급은 다음과 같은 시기에 지급한다.

계약금 및 중도금	약 58.5%	8,072,300,000원	1) (1순위 우선수익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등 우선수익자의 지위 확보 조건)
잔금	약 41.5%	5,720,700,000원	사업계획승인 및 인천시 소유 부지 매입가능시 (사업권양도·신탁계약해지·소유권이전등기와 잔금지급은 동시이행조건)

제5조(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처분제한 말소)

④ 원고는 계약금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서상 1순위 우선수익자의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고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가지며, C은 원고의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수탁자인 D에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조건)

① C 등은 연대하여 인허가청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접수하여 사업승인 협의를 진행하고, 인천시 소유 토지에 대한 매입절차를 관계기관과 협의 진행하여 사업부지에 편입시켜야 한다.

③ C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원고에게 제공하고, C 등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 및 건축심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일체의 권리 등

제2조에 따른 모든 권리를 매수인에게 양도하며 관련 인허가 자료 및 설계도서 등 매도인이 요구하는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④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와 L의 사업권양도 및 C의 부동산담보신탁 해지요청공문 발송, 소유권이전등기 및 D의 신탁해지시행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기타 신탁계약 해지비용은 C이 부담한다.

제8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손해배상)

① 원고는 C 등의 계약위반으로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원고는 C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대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와 C 등의 계약위반 등으로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본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C 등은 연대하여 원고로부터 기수령한 매매금액의 배액을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K조합 등에 합계 6,775,076,348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 K조합 등으로부터 1순위 우선수익권 금액 합계 8,700,900,000원의 권리를 양수하고, C에게 1,297,223,652원을 지급함으로써 계약금 및 중도금 8,072,300,000원(= 6,775,076,348원 + 1,297,223,652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또한 C은 같은 날 D과 1순위 우선수익자를 K조합 등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원부상 1순위 우선수익자가 원고로 변경되었고, C은 원고에게 차용금액 8,700,900,000원, 원금변제기일 2018. 5. 31., 이자율 연 6.9%, 지연손해금을 연 22%로 각 정한 대출약정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L와 소외 N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원고와 C 등, N은 2017. 9. 28. 이 사건 계약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권양수도 및 매매계약서 관련 특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같은 날 위 특약에 따라 L와 원고는 L가 이 사건 사업주체로서 문화재현상변경협의 및 건축심의 등 기존 진행한 협의, 심의 및 인허가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며, 향후 인허가 관청에 대한 사업주체 명의변경 신고 등의 추가적인 절차 진행이 필요할 경우 신의성실로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사업권양수도계약을 작성하였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사업권양수도 및 매매계약 관련 특약서

'갑' 매도인 겸 위탁자: C

'을' 양수인 겸 매수인: 원고

'병' 양도인 겸 시행자: L

'정' 매도인과 양도인의 연대보증인: N

제1조

갑과 병이 본계약 제6조(계약조건)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갑과 병을 대위하여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진행하며, 이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갑과 병이 부담해야 하나, 우선 을이 선비용 처리하되, 추후 본계약 매매잔금과 상계하기로 합의한다. 단, 본계약 제2조의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 시 을이 선 집행한 비용은 갑과 병이 상환하기로 한다.

제2조

갑과 병은 본특약의 체결과 동시에 당초 본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및 건축심의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을에게 양도하고,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3조

정은 갑과 병의 을이 상기 제1조 및 제2조의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사업계획승인과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및 건축심의와 관련한 인허가 등 관련 제비용(303,400,000원)에 대해 갑과 병의 상환을 보증하는 연대보증인인 정은 위 금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기로 한다.

제4조

을은 신의성실로 본 사업 인허가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등의 민원 및 기타 사유로 인해 2018. 3. 31.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불승인시 갑과 병은 부동산담보신탁에

관하여 을이 본계약 신탁부동산의 1순위 우선수익자로서 신탁기간 종료 전 신탁부동산 처분요구 진행함에 동의하고, 이에 부합되는 서류를 을과 신탁사에 제출하며, 갑, 병 및 정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바.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위 등

1) 원고는 2017. 9. 28. O건축사사무소에 건축물설계용역계약(2015. 11. 27.) 및 지구단위계획 의제협의용역계약(2015. 11. 27.)의 용역비용 일부로 6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8. 1. 25.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P가구(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의 주 출입구를 북쪽 10m 도로변으로 추가 설치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서구는 2018. 2. 5. 원고가 제안한 내용이 '가구 내 일부획지의 부정형 토지이용계획으로, 잔여 획지 토지이용계획 비효율성 및 불합리로 지구단위계획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P가구는 공동건축을 전제로 구역 전체의 도시기반시설과 가구 및 획지의 규모 등이 수립 결정되어 있고, 북측 공공시설과 주변 단독주택용지 배치로 인한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상충을 최소화한 진출입로 계획이므로 주민제안한 북측 차량출입 허용구간 추가는 지구단위계획수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이라는 이유를 들어 Q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주민제안 입안이 미반영되었음을 통보하였다.

3) 원고는 2018. 3. 22. C 등에 이 사건 사업권을 득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제안(P가구) 입안 반영'은 필수적인 요건인데, 인천광역시 서구의 주민제안 입안 미반영 통보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요건에 해당하니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재차 촉구하는 동시에 이 사건 계약상 약정기한인 2018. 3. 31.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인들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사. C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9. 2. 8. C에 1,300,000,000원을 변제기 2019. 7. 31., 연 이율 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C은 2019. 6. 3. 피고와, C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이 D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신탁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금 채권 1,332,700,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2019. 6. 3.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D에 도달하였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2019. 6. 3. 낙찰자로 선정된 피고가 낙찰대금 16,011,100,000원 전액을 완납한 후 2019. 7.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신탁등기가 말소되었다.

4) D은 2019. 10. 1. 채권양수인인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낙찰대금에서 신탁비용, 우선순위권 채권 등을 공제하고 남은 861,092,270원을 이 사건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아. 관련 사건의 경과

1) C 등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은 C 등과 원고의 합의로 2018. 3. 8.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원상회복으로서 D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권의 해지동의서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8가합61924호). 위 법원은 2019. 6. 21. L의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C의 청구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해제된 것이 아니라 C 등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의무 불이행과 원고의 위 바.3)항과 같은 해제통지로 2018. 4. 1. 해제된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원상회복으로서 D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권의 해지동의서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나, 다만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8,072,300,000원, 용역비용 66,000,000원,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2, 3항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예정액 1,379,3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선이행하여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판결에 원고와 C 등이 모두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인천) 2019나12150호(본소), 2019나12617(반소)], 위 항소심에서 C 등은 청구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동인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수령한 8,072,300,000원, 용역비용 66,000,000원,

손해배상 예정액 1,379,3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 중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회수한 계약금 및 중도금 원금 8,072,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는 반소청구를 추가하였다. 위 법원은 2020. 7. 3. 제1심과 같은 취지에서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26,793,420원(=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2,781,493,420원1) + 용역비용 원금 66,000,000원 + 손해배상예정액 1,379,3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반소청구에 대한 부분), C 등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는 위 돈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본소청구에 대한 부분)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판결에 C 등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0다253928(본소), 2020다253935(반소)] 2020.

11. 26.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6, 4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C에 대하여 관련 사건에서 확정된 바와 같이 4,226,793,42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양수받은 채권의 변제로서 D으로부터 861,092,27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861,092,27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 1)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C은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 2) 피고는 C에 대한 재무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이후 이 사건 토지가 고가에 매각된 사정을 고려하여 C이 충분한 자력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전혀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살펴본 원고의 C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채권은 확정된 관련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2018. 4. 1.경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그 이후인 2019. 6. 3.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C의 무자력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0, 41, 42, 5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일인 2019. 6. 3.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① C에 대한 2018. 12. 31. 기준 재무제표상 자산은 12,924,538,154원인 반면, 부채는 이를 초과하는 13,099,642,145원이다.

② 위 재무제표상으로는 이 사건 토지(재고자산)의 가액이 10,643,937,92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가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16,011,100,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5,367,162,080원 과소계상되었다고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C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중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순차적으로 충당하고 남은 잔여액(정산금)이 있을 경우에 수탁자인 D에 대하여 그 정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인바, D은 2019. 10. 1.까지 위 경락대금 16,011,100,000원을 이 사건 토지 보유에 따른 재산세, 감정평가비용, 신탁보수 등으로 합계 669,425,560원, 2) 원고의 1순위 우선수익권 금액 8,700,900,000원, R의 2순위 우선수익권 금액 3,050,000,000원, S의 3순위 우선수익권 금액 1,200,000,000원에 각 순차로 충당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금액 역시 C의 소극재산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충당된 금액 중 위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액은 원고에 대한 채무 8,072,300,000원과 R에 대한 채무 1,700,000,000원의 합계 9,772,300,000원에 불과하여 총 3,848,045,560원이 미반영되었으므로, 결국 위 재무제표에서 과소계상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1,519,116,520원(= 5,367,162,080원 - 3,848,045,560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③ 아울러 앞서 살펴본 관련 사건에서 확정된 바와 같이 원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가지고 있던 채권의 합계는 아래 표와 같이 12,008,814,027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데, 위 돈

중 위 재무제표에 채무로 계상된 금액은 8,072,300,000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제한 1순위 우선수익권 금액 8,700,900,000원 외에 3,307,914,027원의 채무를 추가로 소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계약금 중도금	원금	8,072,300,000원	8,072,300,000원
이자	2017. 6. 14.~2018. 4. 30.(321일간) 연 6.9%	489,844,856원	
지연손해금	2018. 5. 1.~2019. 6. 3.(399일간) 연 22%	1,941,332,860원	
특약에 따른 대여금	원금	66,000,000원	66,000,000원
이자, 지연손해금	2017. 9. 28.~2019. 6. 3.(614일간) 연 6.9%	7,660,701원	
손해 배상금	원금	1,379,300,000원	1,379,300,000원
지연손해금	2018. 10. 16.~2019. 6. 3.(231일간) 연 6%	52,375,610원	
합계	12,008,814,027원		

④ 피고는 위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인 2019. 2. 8. C에 13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돈을 C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돈이 이체된 C의 예금계좌는 2019. 5. 27.경 잔고가 0원으로 나타나고, 달리 C이 위 돈을 2019. 6. 3.까지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4) ~~유리 C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여 부담한~~ 위 차용금 채무 1,324,789,041원

⑤ 그렇다면 C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적극재산은 14,443,654,674원(= 12,924,538,154원 + 1,519,116,52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17,732,345,213원(= 13,099,642,145원 + 3,307,914,027원 + 1,324,789,041원)으로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3,288,690,539원 초과하는 채무초과(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⑥ 그 외에도 피고는 위 재무제표에 기타 미지급금채무로 계상된 386,132,000원은 S에 대한 채무와 중복하여 계상된 것이므로 이를 C의 채무에서 제외해야 하고, 위 재무제표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된 2,097,500,000원은 소멸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C의 채무에서 제외해야 하며, 위 재무제표에 '선급금'으로 계상된 2,203,372,480원은 사실 L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연 4.5%의 이자가 가산되므로, 2019. 6. 3.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반영하더라도 위에서 살핀 것과 같이 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므로, 위 주장들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5241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C의 채무초과 정도가 중한 편이었고, 이 사건 채권은 C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실체가 확인되는 거의 유일한 자산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 C은 원·피고 외의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C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경위와 시기 등에 비추어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C에 대한 2018. 12. 31. 기준 재무제표상 자산은 12,924,538,154원인 반면 부채는 13,099,642,145원으로서, 부채의 자산 초과액이 175,103,991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재고자산)의 가액이 10,643,937,920원으로 과소계상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위 재무제표는 C의 신용·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중 하나에 불과할 뿐 아니라, 2018.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2019. 6. 3.경 C의 신용·재정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점, ② C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가 D에 신탁되었으므로 피고는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자들의 존재를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가 향후 C와 함께 인천 서구 T외 9필지 일대에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C에 13억 원을 대여하고(을 제1호증 전문), 거액의 이 사건 토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의 내용 및 C의 재정상황을 익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록 원고와 C 사이의 제1심 판결이 2019. 6. 21.에 이르러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2018. 12. 18. 경에 이미 D에 C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공매를 요청하면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예정액의 지급을 주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 사실 및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원상회복의 방법

1)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면 이를 그 채권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그 양도된 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D로부터 861,092,27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의해 변제받은 861,092,2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가액배상의무는 형성의 소인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확정되어야만 비로소 그 발생이 확정되며, 또한 이 사건 소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창근

판사하진우

판사김두일

1) 피고는 2019년 분 종합부동산세액 2억 원은 C에 구체적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D이 이를 미리 유보하여 신탁비용으로 계상하였고, C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C이 부담하는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납세고지서(갑 제4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삼성세무서장은 2019. 11. 18. D에 대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로 208,056,62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190조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C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위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2) 차용 원금 1,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8.부터 2019. 6. 3.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24,789,041원의 합계